

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

•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2. 5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)

가. 개정이유

○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조문을 정비하고 포항사랑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할인판매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- (현행)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- (개정)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○ 목적 규정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는 등 조문 정비(안 제1조)

○ 포항사랑상품권의 발행 종류 정비(안 제4조제2항)

- 지류형 상품권과 전자식 상품권(카드형, 모바일)으로 구분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상품권 자금관리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
○ 상위법령에 맞게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0조)

○ 할인판매 및 수수료 관련 조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함(안 제15조제3항~제5항, 안 제15조의2~제15조의3)

○ 할인판매의 비율 및 한도 예외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2제3항)

다. 관계법령

○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조문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,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충돌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 바,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,
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